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답안지

응시자는 아래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작성한 답안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답안지를 받는 즉시 면 수(표지 제외 10면)와 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한 장이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2. 답안지 표지 앞면의 굵은 선 안에 응시번호 7자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과목명(2곳)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은 각 장의 앞면 과선 내에 가로쓰기로 기재하고 출제된 문제 순서대로 1권의 답안지(10면)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 표지 및 각 장의 뒷면에는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4.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이나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5.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7. 답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8.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담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
9. 시험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 처리합니다.
10.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기재하지 말것

과목명

감독관
날인란

기재하지 말것

과목명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답안지

응시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